

5-10. 금고 협력사업비 운영 현황

- ☐ 금고 협력사업비는 자치단체와 금고은행간 약정에 따라 금고지정에 대한 반대급부로 금고은행에서 자치단체에 용도 지정 없이 출연하는 현금으로, 그 성격은 일반재원(기타수입, 224-06)에 해당합니다. 우리 순창군의 2019회계연도 금고 협력사업비 운영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.

※ 협력사업비의 2019년도 세입예산 편성내역

(단위 : 백만원)

구분	금고은행	약정기간	약정기간 총액	예산 편성액	실제 출연액	세입 처리액
합계			997	332	332	332
제1금고	NH농협은행	'18.01.01~ '20.12.31.	900	300 (당초)	300	300 (19.9월)
제2금고	전북은행	'18.01.01~ '20.12.31.	97	32 (당초)	32	32 (19.9월)

- ▶ 제1금고 : 일반회계 또는 일반회계를 포함한 특별회계, 기금 등을 소관하는 금고은행
- ▶ 제2금고 등 : 일반회계를 제외한 특별회계, 기금 등을 소관하는 금고은행
- ▶ '15.1.1부터 약정기간이 시작되는 경우 지방재정법 개정('14.5.28)에 따라 금고의 수는 2개를 초과할 수 없음

※ 협력사업비의 2019년도 세출예산 편성 · 집행내역

(단위 : 백만원)

추진 부서	사업명	예산 편성				집행액	집행잔액 (불용액 등)	비고
		분야	부문	통계목	금액			
농축산과	비닐하우스 설치 지원사업	농림해양 수산	농업 농촌	민간자본 사업보조	332	177	155	

※ 세출예산에 편성한 경우 작성

※ 사업명 및 예산편성액란은 예산서상의 사업명과 분야·부문·통계목·금액을 기재하고, 비고란에 그 대상을 할 수 있도록 사업 내용을 간략히 기재